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·후 비교표

- 다 음 -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3 항	<신설>	9. 클래스 S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(신설 2014.02.28.)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1 항	<신설>	9. 클래스 S 수익증권 (신설 2014.02.28)
제 39 조(보수)3 항	<신설>	(클래스 S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5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 (신설 2014.02.28)
제 40 조(판매수수료)4 항,5 항 및 6 항	<신설>	④판매회사는 S 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. 다만,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(신설 2014.02.28)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을 100 분의 0.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

		<p>까지를 말한다.)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공급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클래스 S) 후취판매수수료: 3년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.15%이내 (신설 2014.02.28)</p> <p>⑥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4 항 1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 (신설 2014.02.28)</p>
제 41 조(환매수수료)1 항	<p>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 및 클래스 I 수익증권</p> <p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	<p>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 및 클래스 S 수익증권 (개정 2014.02.28)</p> <p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
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1 항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p>	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(개정 2014.02.28)</p>